

[]설계업

[]감리업

등록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고인	회사명	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)	
	대표자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업종 []종합 []전문(설계업: []1종 []2종)	

변경사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연월일
	대표자·상호 또는 소재지			
	보유장비			
	기술인력			

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(감리업)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전력기술인단체의 장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1. 기술인력 변경등록: 5천원/건 2. 그 밖의 사항의 변경등록: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6조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
------	-------	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신 고 인	처 리 기 관	
	기술인력 변경: 전력기술인단체 기술인력 외 변경: 시·도	전력기술인단체
신고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검토 확인 · 결재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통보 기록 · 관리 변경된 등록증 발급		